



서울캠퍸스 곳곳에 '160억 학교 운영비를 지급하라'는 총학생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수형 기자)

▶면에서 이어짐

경희학원의 경우 문제가 된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으로 전출여부' 항목을 평가대상으로 두지 않는 학계법인도 많았다. 동국대 등 우리학교처럼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을 통해 전달하는 대학이 숱하지만 서울권 대학 중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정을 권고 받은 사학재단은 경희학원 뿐이다.

161억 원의 이동은 순간에 이뤄진 회계 상의 움직임일 뿐이라 경희학원이 161억 원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누군가 '해먹었을' 것이라는 총학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인의 배임으로 볼 수 있는가

경희학원은 '무책임한', '불법' 재단이라고 낙인찍힌 것에 얹을하다고 말한다. 경희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이 70억 원 적자를 낸 것도 법인수입보다 학교지원 규모가 커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수년째 수십 억 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학원은 지난해 정확히 71억 원의 적자를 봤다. 부족한 법인전입금 문제는 경희학원이 배임을 저질렀다가 보단, 경희학원의 수의 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다.

경희학원의 전입금지원은 분명 감소세다. 경희학원이 지난 15일 양 캠퍼스 총학과 우리신문에 제공한 <총학생회 임상교원 인건비 전출금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부속병원전입금을 제외한 경상비전입금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경상비전입금은 2007~9년 40억 원 내외, 2011~15년 20억 원 내외를 전전하다 지난해에는 12억까지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경희학원은 2016학년도 기준, 법정부담전입금 152억 중 95억만을 학

교에 지원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 교원과 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며, 경상비전입금과 달리 법인이 대학에 지원할 법적의무가 있다. 그러나 경희학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부담전입금의 62.5%만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은 교직원의 연금 등을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학교법인 재정상황에 따라 학교가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달고 있다. 더욱이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5학년도 기준 전국 153개 사립대학 중 22.9%인 35개 대학만이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부담하고 있다. 때문에 법정부담전입금을 위법행위로 볼 순 없지만, 법인의 대학지원이 넉넉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회사 수입을 포함한 경희학원의 운영수입은 2016학년도 기준 247억 원에 그친다. 법인 입장에선 수입으로 계산된, 논란 속의 부속병원전입금 161억 원도 포함된 금액이다. 사실상 수입이 아

닌 이 돈을 빼면 86억 원이 법인 수입의 전부인데, 법정부담전입금 104억 원과 법인 운영비용 등을 빼면, 위 경희학원 관계자의 발언대로 지난해 경희학원은 71억 원의 적자를 봤다. <총학생회 임상교원 인건비 전출금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10년 동안 수익대비 대학에 전출한 돈이 259억 원 많다.

"회계비리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 없다"

결론적으로 경희학원은 총학이 주장하는 160억을 지원할 강력한 의무가 없으며 법정부담전출금도 채 부담하지 못하는 현재로선 그럴 형편도 안 된다. 경희학원은 지난 15일 '부속병원전입금 개념이 없던 과거부터 경희학원은 부속병원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대학으로 보내왔다', '십 년째 수익보다 많은 전출금을 대학으로 보내고 있다', '전출금 확대를 위해 수의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학생회 임상교원 인건비 전출금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양 캠퍼스 총학과 대학주보에 발송했다.

법인의 답변서를 받은 총학은 현재 "회계비리라는 말은 한 번도 쓴 적 없다"며 "160억 원을 법인이 주는 것처럼 속인 것에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학은 "아직 정작 총장님께선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총장이 경희학원의 실소유주이니 총장이 답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속병원전입금 : 같은 학교법인에 부속된 병원이 학교에 제공하는 전입금

*경상비전입금 : 학교법인이 학교에 자의로 주는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 법인이 학교에 제공해야 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전입금

비리라는 것은 재산이 유출되고 개인이 이익을 봤을 때가 비리다.

인건비로 쓸 돈을 금액 맞춰서

줬을 뿐이다

-대주회계법인 경희대 담당자

“

“

경희학원은 2017-2학기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의지가 있는 학생

2. 지원대상 : 2017-2학기 현재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의지가 있는 학생

3. 도전분야 : ①창업/②봉사/③팀방/④연구/⑤기타

※ 분야별 편집하여 정규학기

4. 선발인원 : 50명(팀내외)

※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정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선발방법

• 경희 꿈도전장학 운영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평가 실시

•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분야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대상자 선발

※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탈락됨

[경희 꿈도전장학 평가방법]

1. 목적

• 학생들의 인생목표 수립, 사회진출분야 탐색, 진로설정 등 심도 있는 자아성찰 계기 마련

• 목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결과물 도출을 통한 학생융합설계능력 함양

• 교수-학생 간 실질적지도 계기 마련

2. 지원대상

3. 도전분야

4. 선발인원

5. 선발방법

6. 장학금 지급액

7. 장학금 신청 방법

8. 선발일정

9. 장학금 의무사항

10. 유의사항

11. 기타문의

12.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13. 2017-2학기 경희꿈도전장학금 신청 안내

획일적 폐강기준으로 소수학과 '진통'

신정인 기자 sjii0201@khu.ac.kr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9개의 폐강강좌 공고문이 게시됐다. 우리 학교는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폐강기준을 적용해 전공과목은 15명 미만(전공과목 중 전체영어 진행강의는 10명 미만), 교양 및 기타 과목은 신청자가 20명 미만이면 강의가 개설되지 않는다. 이전에 10명 이상이 신청하면 수강 가능했던 전공과목 개설기준과 비교했을 때 5명의 수강자가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상향된 폐강 기준은 소수학과에 특히 치명적이다. 한 학번 당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과의 경우 매 학기 폐강위기에 놓인 강좌들을 개설하기 위해 학과 행정실별로 다양한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등록 후 휴학을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강위기에 처한 강의의 수강신청을 부탁하는 방법이다. 휴학 예정인 학생이 등록금을 내면 이후에 휴학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통해 강의 출석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결국 수강정 기간 동안 출석부상에는 이름이 올라가지만, 실제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보통 학과 차원에서 휴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학생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강신청을 부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사정으로 이번 학기 휴학을 결정한 A 씨는 "9월 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학과 행정실이었다"며, "특정 수업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강신청을 부탁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1, 2학년 학생들에게 고학년 학생 대상 수업 수강을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신입생을 비롯한 저학년 학생들이 폐강 위기 과목의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3학년 과목을 수강하는 식이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B 씨는 "학과 커리큘럼 상 선수강 과목이 있음에도 폐강을 면하기 위해 후수강 과목을 먼저 수강했던 적이 있다"라며, "수업내용이 어려워 진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성적 취득에 있어서도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러한 커리큘럼의 붕괴는 한 학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미 1학년 때 고

학년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3, 4학년이 되면 다시 해당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져 수강하려는 수요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시 저학년 학생들이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한, 본인 학년의 강의가 폐강위기에 있으면 자신이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이유를 서술해 학과에 제출하는 방법도 폐강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학생들은 '수강 불가 사유서'를 학과 행정실에 제출한다. 이는 이미 폐강이 예상되는 강의이지만 자신은 왜 해당 강의를 신청할 수 없는지에 대한 각자의 상황을 서술한 사유서다. 이것이 제출되면 학과 행정실 차원에서 이를 취합하여 강의 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학사지원과에 보내는 식으로 폐강을 막는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과는 "폐강대상 강의이지만 출업대상자가 있거나 학과 사정에 의해 강의를 폐강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며, "음악대학의 경우는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인한 강의의 폐강이 잦은 것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는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했다. 음악대학 작곡과에 재학 중인 C 씨는 "학과 사정에 맞지 않는 폐강기준 때문에 학생들과 학과 행정실 모두 소모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다"라며, "듣고 싶은 강의가 없어질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학업에도 지장을 받고 사유서 작성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학과를 꾸려가고 있는 음악대학 박준영(작곡과) 교수는 "전공강의 폐강기준이 10명 미만이었던 2014년 이전에는 그래도 강의를 개설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매년 입학정원이 1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 입대, 휴학 등으로 학생 수가 더 줄어 강의 운영이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의 특성상 소수정예강좌가 많이 필요한데 15명을 채워 강의하는 것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어려움을 토로 했다. 더불어 "학과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강의 개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과의 상황에 맞는 강의 개설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2017년도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 안내

1. 훈련대상 : 2017년 향방기본훈련 불참 및 연기자, 2학기 복학자 중 향방기본훈련 대상자

2. 장소 : 금곡비군 향방센터

3. 일정

훈련명	훈련일자	대상	소속
향방기본 1차보충훈련	9.28(목) 10.13(금)	1~3시간 대상자 4~8시간 대상자	소속 구분 없음 문과대학, 이과대학, 호텔관광대학
	11.3(금)	4~8시간 대상자	교원 대학원(일반/특수/전문), 간호과대학, 경영대학, 무용학부, 미술대학,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악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자율전공학과, 정경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4. 이동방법

가. 단내이동

1) 운행수단: 45인승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2) 출발장소 / 시간: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 50분 출발

나. 개별이동

1) 시내버스: 30번(청량리/휘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2) 철도: 중앙선 도로역 2번 출구 버스 중앙차고지로 청류정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5. 참고 및 유의사항

가. 훈련소집장지는 훈련부문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계시판 등에 공고 및 공지되며, 1학 또는 2학 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직접 교부 나.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ibigun.mil.kr>)에서 훈련일 또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참가하여 훈련이 가능하다. 병장전투부, 전투모, 군화 등 별장장사 훈련입소 불가

라. 훈련장에 대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침

마. 훈련장에 대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침

바. 훈련부문별로 군화 등 별장장사 훈련입소 불가

사. 훈련장에 대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침

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자. 훈련일기준으로 학생에게 훈련을 신청하는 학생은 예비군연대본부에서 훈련장소 불가

차. 훈련, 학과 등 정학별 훈련을 신청하는 학생은 예비군연대본부에서 훈련장소 불가

반드시 수강